

工業發展法 (解 說)

商 工 部

1. 序

60年代初만 하더라도 1人당所得이 80달러대의 最後進國이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2千달러대로 올라가면서 GNP總額으로 全世界 20位, 1人당 GNP로는 41位(OPEC除外 34位), 輸出額은 15位까지 각각 浮上되어오는 過程에서, 工業은 文字그대로 中樞의 役割을 해왔다.

1次 5個年計劃 期間中の 製造業 成長이 GNP 全休의 成長에 對해 미친 寄與率은 18.4%, 2次 期間中은 33.2%, 3次 36.9%, 4次 48.4%였으며 84年度에는 56.0%에 달했다.

오늘날 우리國土 全休의 불과 0.54%의 面積 위에 세워진 43,483個의 各種 工場들이 GNP總額의 30%, 輸出의 95%, 總就業者數의 23%를 擔當하고 있다는 現實은 우리의 成長에 對한 工業의 比重을 새삼 일깨워 주고있다.

그동안 이러한 工業의 發展을 制度的으로 뒷받침 해온 것은 ▲機械工業振興法(67年) ▲造船工業振興法(69年) ▲電子工業振興法(69年) ▲石油化學工業育成法(70年) ▲鐵鋼工業育成法(70年) ▲非鐵金屬製鍊事業法(71年)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79年) 등이다.

특히 60年代 前半期에 工業成長의 基盤造成을 위한 社會間接資本의 擴充事業이 어느 程度 進척되게 되자 2次計劃부터 工業發展이 본격적으로 展開되기 시작하였거니와, 이러한 趨勢속에서 이들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겠다는 政府의 強力한 意志가 成文化된 것이 바로 이들

法律이었다.

그러나 이제 制定된지 15年餘가 흐르는 過程에서 周邊 與件도 많이 變했고, 政府의 施策基調도 큰 轉換을 해오고 있는 趨勢에 副應하여 이들 法律들은 全般的인 再檢討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2. 새 法案의 推進背景

가. 國內外 與件의 變化

從前的 法規들이 根本的인 再照明을 받게 된 事由에 對해서는 보는 角度에 따라 여러가지로 說明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우선 國內外 與件이 이 法制定當時에 비해 어떻게 變해 왔나부터 簡單히 살펴볼까 한다.

(1) 우선 對外的인 與件으로 보면, 우리의 工業이 中進國水準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우리는 漸次로 所謂 “全方位競爭” 狀況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點이다.

우선 우리의 製品들이 先進國產業과 競合關係에 突入하여 그들로부터 輸入規制를 받게 되는가 하면(84年度 對先進國 輸出總額中 무려 41.2%가 輸入規制 아래 輸出이었다), 우리와 直接的인 競爭關係에 있는 나라들(특히 新興工業國들)과는 실로 한발 한발을 다투는 間髪의 熾熱한 競爭이 日常化되고 있으며, 우리보다 뒤늦은 後發開途國들로부터도 積極的인 追擊을 받고 있는 實情이다. (예를들어 美國 總輸入에 對한 比重이 우리나라의 경우 80年度 1.8%에서

3.0%로 늘어난데 비해, 中共은 0.4%에서 1.0%로 두배 이상 擴大되었다)

이러한 狀況에도 不拘하고 우리 產業의 競爭 力 面에서는 여러가지로 우려하는 指摘이 많이 提起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指摘하듯이 70年代와 같은 外 形成長爲主의 高인플레이 成長時代에는 企業들이 生産성과 品質의 向上, 技術의 革新에 對한 努力보다는 不動產 等에의 投資로 企業의 發展을 促하려는 風潮가 支配하게 마련이며, 이러한 風潮로 因해 우리의 競爭力은 直接的인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 몇가지 例만 들어보더라도 于先 日本과 的 勞動生産性比較를 해볼 경우, 日本에 비해 우리나라의 生産性 水準이 相對적으로 70年代 末까지 계속해서 低下(惡化)되어오다가 80年代에 들어와서야 該간의 物價安定 施策과 生産性 向上을 爲한 努力에 힘입어 상당히 改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日本에 비해 1/3을 조금 넘는 水準에 不過한 것으로 專門機關들은 分析하고 있다.

이러한 實情下에서 우리의 產業들은 舊態依然한 經營陋習을 하루빨리 脫皮하여 새로이 展開되는 競爭與件 속에서 스스로 버티내고 發展해 나갈 수 있는 競爭力 基盤을 確立해 나가야 할 必要性이 切實해지는 것이며, 競爭力이 있는 産業만이 自生해나가고, 競爭力이 構造的으로 喪失되는 業種은 自然스럽게 사라지게 되도록 하는 것이 國民經濟에 큰 負擔을 줄이 없이 活力있는 産業構造를 維持해 갈 수 있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新法 構想 動機와 關聯하여 여기서 言及해두고 싶은 것은 現行法律이 制定되었던 70年代初에 비해 工業發展의 바탕도 많이 變貌되어 왔다는 事實이다.

于先 工業의 生産規模가 70년에 비해 8.9배가 늘어났으며, 이 過程에서 業休數도 21千個에서 43千個로 거의 倍加되었다.

뿐만 아니라 貯蓄率面에서도 70年の 總投資

率 25.3%中 15.7%만이 國內貯蓄으로 充當되었는데 비해, 85年の 경우에는 30.0%의 投資率中 27.4%가 國內貯蓄率에 依存(따라서 그 比率은 91.3%)하게 되는 등 投資力量도 크게 擴大되었다.

또한 人力面에서도 學士輩出人員이 3배가 늘어난 9萬名, 碩士는 7.5배가 늘어난 1萬5千名, 博士는 5배가 늘어난 1千余名을 每年내고 있으며 海外勤務人員도 70年代의 平均 4百名水準에서 現在는 6千余名의 人員이 세계 各處에서 踴躍하고 있는데다 每年 27萬名에 달하는 사람들이 海外旅行을 하고 있어 그만큼 比鄰에 對한 國民的 力量도 크게 提高되었다.

이 외에도 自動車가 1百萬台가 넘고 電話台數가 지난 15年間 75萬台에서 7百萬台로 늘어나는 등 工業의 發展基盤 自休가 60年代末의 初期開發段階와는 너무도 많이 달라졌다는 事實 自休가 우리에게 이에 맞는 새로운 政策의 展開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從前과 같이 産業에 對해 政府가 直接 깊숙히 介入하여 支術分野(業種)나 支援業休를 人爲적으로 選定하고 이에 對하여 集中的으로 支援을 해주는 方式의 政府體制가 果然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이냐에 對한 指摘이 높게 일게 되는 것이다.

나. 國內外·與件變動에 對應하는 政策基調의 推移

—對內·對外 競爭의 導入—

以上과 같은 國內的 또는 對外的인 側面에서 的 與件이 變動되는데 對應하여, 우리들은 該간 이에 對해 어떠한 內容으로 政策對應을 해왔는가—이에 對해서는 한마디로 對內·對外 競爭의 導入의 擴大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80年代에 들어서서 第5共和國 出帆以後, 市場經濟原理에 立脚한 自律競爭休制의 確立을 위해 注力해온 것이 政策基調上의 커다란 特徵의 하나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 根本的인 趣指와 追求하는 理念이 무엇인

가에 對해서는 論者에 따라 여러가지로 說明할 수도 있겠고, 어찌보면 經濟學의 根本原理까지 論及해야할 本質的인 政策基調의 問題가 되겠으나, 여기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特有的 事情에 立脚하여 다음 몇가지로 要約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資源의 最適配分誘導이다.

特定分野에 對한 政府의 重點支援에 기대려는 企業風土下에서 자칫 惹起되기 쉬웠던 資源配分の 歪曲을 막고, 市場機能의 原理에 立脚하여 資源의 自然的인 配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나친 許可制·登錄制의 規制로 資源이 特定分野에 人爲的으로 注入되어 가도록 하는 現象은 可及的 止揚되어야겠다는 것이다.

各種 規制의 撤廢와 中小企業들의 創業이 容易해지도록 하려는 措置가 模索되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1980年 12월에 制定된 公正去來法의 立法自的도 이러한 政策方向을 追求하는 代表的인 事例의 하나인 것이다.

둘째로, 比較優位原理에 立脚한 産業構造로의 改編이다.

激變하는 國際經濟與件과 날이 갈수록 熾烈해져가는 國際競爭 속에서 우리 産業이 發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産業에 대한 政府의 지나친 保護乃至 支援은 이를 漸進的으로 止揚해 나가면서—民間의 自律的인 力量의 터진 위에서 各者 스스로 模索하고, 挑戰하고, 事業을 키워나가도록 圖謀하는 가운데—어떠한 內·外 與件 속에서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競爭력과 意志를 갖출 수 있도록 誘導하고자 하는 것이다.

近來 政策資金의 漸進的인 縮小 또는 金利隔差의 止揚 등을 비롯하여 金融 全般에 걸친 自律化가 推進되고 있고, 內國稅나 關稅制度面에서 特定産業에 대한 減免이 縮小되는 등 産業支援制度面에서 이른바 均衡化乃至 中立化(neutral policy)의 概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脈絡에서 推進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째로, 産業과 各企業들의 體質을 構造的으

로 改善시키자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도 같이 初期 開發育成段階에 흔히 볼 수 있었던 外部依存(期待) 風土下에서는 企業이 自身들의 內部 經營構造를 改善하고 強化하는 것을 바라기가 어려웠다.

이제 冷嚴한 競爭與件 속에서 이겨나가는 길은 오직 財務構造를 비롯한 企業의 體質全般을 스스로 改善하고 다져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狀況이다.

네째로는 外部로부터의 壓力에 對한 對處手段이다.

우리의 産業이 자라고 輸出이 늘어나면 날수록 우리의 輸出에 대한 輸入國側의 規制도 強化되고, 우리에게 對한 改放의 壓力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必然的인 趨勢이다.

이러한 趨勢에 處하여 우리의 産業이 취해야 할 課題도—오직 競爭力을 強化하여 어떠한 條件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自主力量을 길러내는 길밖에 없음은 勿論이다.

勿論 이것만이 그 事由의 全部는 아니겠지만, 近來 輸入自由化가 果敢하게 推進되고 있고(88年까지 先進國水準인 95%水準 示現 予想), 關稅率面에서도 每年 引上되어가고(88年까지 全品目 平均關稅率 18.1% 予想) 있는가 하면, 外國人 投資의 門戶도 더욱 넓혀 從前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轉換하는 등 一連의 措置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開放趨勢에 對應하는 施策의 方向들로서 不可避한 選擇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 새로운 政策基調에 비추어 본 現行 法律의 特徵(問題點)

우리가 現在 運用해오고 있는 法律들은 그 制定以來, 分明히 많은 成果를 쌓아왔다. 지난 70年代初以來 15年余에 걸쳐 이들 法律들은 그간의 外形的인 成長을 制度的인 面에서 뒷받침해 왔다는데는 누구나 異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같이 새로운 與件의 變化와 政策基調의 轉換은 이들 法律에 對해서도 새로운 照明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察해 볼 수 있겠으나, 이들 法律들은 制定 當時의 與件과 法制定 目的의 特殊性 때문에 그 體制와 內容面에서도 이에 따른 特殊性을 띠지 않을 수 없다는데서부터 우리의 論議를 始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廣範한 規制와 政府의 支援에 立脚한 育成의 概念이 지배하였다는 점이다.

當時 너무도 不足했던 資源事情으로는 産業을 일으키려 함에 있어 自然히 그 配分對象을 政策的으로 選擇하는 分野로 制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各 法律들은 當該分野에서 일정한 基準을 정해놓고 이에 該當되는 業체들만이 「登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登錄業체에 恨해 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工場의 製造施設을 設置하려는 境遇에도 許可를 받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製造工程에 對하여도 政府가 干涉할 수 있는 根據規定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許可制가 그 理由의 全部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製造業체의 숫자를 比較해 볼 때 우리의 境遇 43千個로 台灣의 63,220個, 日本의 447,000個에 비해 커다란 隔差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로, 支援對象이 包括性을 띠게 되었으며 支援에 對한 意志가 直接的이고도 강렬하게 表出되어 있다는 점이다.

機械工業·纖維工業등 各分野別로 特別法을 制定하는 過程에서 비록 이들 特別法이 各個別分野를 對象으로하는 法이면서도 各法律自體는 該當分野의 모든 工業을 그 對象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支援對象도 機械工業全般, 纖維工業도 모든 分野에 該當되도록 規定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工業의 育成을 위해서는 가능한 여러가지의 方法을 통해 積極적으로 이를 支援해 준다는 의도하에 例를들어 特別團地를 造成해 준다든지 公共料金を 割引해 준다는 規定, 또는 심지어 政府가 特定業種

에 補助金を 支給할 수 있다는 規定까지 挿入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째로 初期 成長段階의 이들 法律들은 外形적인 成長面에보다 더 力點을 두어왔으며 工業의 競爭力向上에 對한 內容은 相對적으로 미흡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各分野別로 生産規模를 어떻게 늘리고 또한 이를 促進하기 위해 어떤 支援을 한다는 規定들은 많지만 이들 工業이 生産性을 提高시키고 技術을 發展시키며 品質을 向上시키는 努力을 통해 産業의 競爭力을 強化해 나가도록 하는데 對한 規定들은 거의 없거나, 形式的으로 規定은 몇 條項이 있다 하더라도 그 具體적인 內容이 未備하여 實際運營이 거의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例를들어 「○○工業 合理化計劃」을 樹立한다고 되어있지만 이들 條項이 實際 運營된 実績은 거의 없다.

네째로 政策樹立의 政府主導型的 性格이다.

당시 아직 開發初期段階에서 國內에서 가장 잘 組織된 知識과 情報은 거의 政府쪽에 集中되어 있었던 結果였기도 했지만, 各法律에 의한 政策의 決定과 執行은 廣範圍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政府쪽에서 制限된 時間·情報을 土台로 이루어져 왔다는 指摘을 받고있는 것이다.

3. 工業發展法의 推進經緯

以上과 같은 最近의 國內外 經濟動向과 政府 施策方向의 흐름에 副應하여, 工業部門의 法規들을 綜合적으로 再檢討하고 整備한다는 問題는 진작부터 提起되어 왔었다.

이에따라 商工部에서는 1983年 8月부터 各法律의 主務担当官들이 中心이 되어 앞으로의 政策方向을 어떻게 定立할 것인가에 對한 論議를 계속해 오는 가운데, 業界와 關係專門家들의 意見도 廣範하게 聽取하는 一連의 作業이 進行되어 왔다. 드디어 今年 2月에는, 現行法規에 代身할 새로운 法規로서 (假稱) 工業發展法(案)이 成案되기에 이르렀고, 이 試案을 土台로

關係政府機關은 勿論, 各種 研究所와 經濟團體, 그리고 著名한 學界人士等과의 多角的인 意見交換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나타난 建設的인 意見들은 다시 眞摯한 内部討議 過程을 거치게 되었으며, 이 過程을 통해 補完되고 다듬어진 內容들이 正式으로 經濟長官會議과 國務會議에 上程되어 政府案으로 確定된것은 지난 10월 11일이었다. 이어서 正式으로 國會에 提案되었거니와(1985. 11. 29 商工委員會通過), 지금의 予定으로는 明年度 7月 1日부터 具體的으로 新法이 施行되도록 日程이 잡혀있다.

參考로 그間 이 法案과 關連하여 關係機關이나 專門家들의 討議過程에서 가장 關心의 對象이 되었던 것은 產業策의 限界, 다시말해 民間經濟에 對해 어디까지 介入할 수 있는가의 問題에 關한 것이었다.

從前에 政府의 過度한 介入으로부터 惹起되었던 “政府失敗”(government failure)의 事例에 對해 깊이 우려하는 立場에서는, 더 以上の 政府의 干涉이나 介入을 排除하고 市場經濟原理에 徹著히 忠實하여, 產業이나 個別企業이 스스로의 權限과 責任下에 判斷하고 決定하고 行動하도록 두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反面, 아직은 完全한 先進經濟에 이르지 못한 現段階로서는 工業을 보다 더 效率的으로 發展시켜나간다는 次元에서 最少限의 不可避한 介入은 許容되어야 한다는 立場에서는(介入의 範圍를 大幅줄이고 介入으로부터 惹起될 수 있는 副作用은 最大限 予防해나가는 裝置를 請構하는 가운데) 現實에 存在하는 “市場의 失敗”(market failure)를 補完해주는 政府의 機能이 適切하게 存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討論은 活潑하면서도 眞摯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現段階에서 工業의 效率的인 成長을 圖謀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緊切한 政策課題가 되고 있는터에, 不可避한 政策의 存在는 認定되어야 마땅하며, 다만 어떻게하면 從前과 같은 體制를 脫皮하여 合理的이고도 合目的인 政策의 樹立을 圖謀해가느냐가 論究의 焦

點이 되어야 한다는데로 意見이 모아졌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工業政策에 있어서는, 特定業種 特定業體의 人爲的 選定과 恣意的 配慮를 한다는 認識을 基本的으로 拂拭하여 - 各產業分野別로 過去를 돌아보고, 現在를 點檢하며, 未來를 가늠해 보는 立體的인 研究가 - 政策體制乃至 政策形成過程이 基本的 틀이 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소리높이 強調되었다.

勿論 이러한 研究過程에서는 政府(公務員) 側一辺倒의 慣行을 果敢하게 止揚하여, 業界와 研究所, 學界等 國內의 知識과 情報가 總集約化되도록 努力해야 한다는 것과, 產業의 發展을 支援해주는데 있어서도 競爭力을 培養하고 產業을 合理化하는 努力에 對해 支援이 따라주는, 이른바 機能別 支援의 重要性에 對한 主張도 強調된바 있다는 것을 參考로 言及해 두고자 한다.

4. 新法案의 主要骨子

以上과 같은 過程을 거쳐 誕生된 法案의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民間自律基盤을 確立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指摘한 各種 規制(事業者 登錄, 施設登錄等)를 果敢히 徹廢하고 市場原理 내지 自律的인 競爭體制에 立脚한 工業發展體制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市場經濟原理에 代한 例外로서가 아니라 이것이 보다더 完全하게 機能을 發揮할수 있도록 促進한다는 次元에서, 一部 必要한 工業分野에 對한 「合理化計劃」 制度를 活用한다는 것이다.

이 問題에 對하여는 前術한 바와같이 新法案의 檢討過程에서 가장 論議가 많이 된 部分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現實에서 꼭 必要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限해 最善의 政策이 樹立되어 지도록 補完的 裝置로 이 法에 담이지게 되었음을 添言해둔다.

合理化計劃의 對象은 그 視角의 焦點을 「競爭力」에 두고 ① 이것을 갖출때까지 效率的으로

로 提高시켜 나가기 위해 業界가 合心하여 努力하는 分野와 ② 構造的으로 競爭力을 잃어가는 業種으로서 當該産業의 處理(設備減縮·業種轉換等)를 体系的으로 推進해 나가는 分野의 두 가지로 나누어 規定하였다.

먼저, 競爭力 補強分野에 對하여는 技術의 向上이라든지 生産性的의 提高, 施設의 最新化, 또는 必要한 設備投資에 이르기까지 當該業種이 競爭力을 效率的으로 強化해 나가는데 必要한 諸般事業이 推進되게 될 것이며,

다음, 競爭力 喪失分野에 있어서는 施設增大의 規制 乃至 處理의 促進, 事業의 讓渡 또는 業種의 轉換等 當該業種이 國民經濟에 큰 負擔을 줌이 없이 自然스럽게 사라지도록 誘導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事業들을 逐行하는데 꼭 必要한 同共行爲에 對하여는 公正去來法의 適用도 例外로 하게 될 것이다.

이들 對象分野는 原則的으로 業界의 自發의 申請과 工業發展審議會등의 審議를 통해 選定하게 될 것이며, 그 推進하는 過程에 있어서도 原則的으로 事業者의 自主的인 努力에 의하도록하되,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內에서만 政府의 支援을 實施하거나 登錄制 등을 實施할수 있도록 하였다.

세째로 工業支援政策의 再整備이다. 이제 앞으로는 業種別 支援은 「合理化計劃」對象 業種에 局限시킬 것이며, 따라서 業界에 對한 支援은 이른바 「機能別」支援政策으로 轉換하여 技術과 生産性向上을 期하도록 하는데 注力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商工部長官은 「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各種 研究所등에 研究開發을 委託하거나, 各 企業들의 試驗研究開發 및 技術向上促進을 위한 事業을 積極的으로 實施하도록 支援할 방침이다.

이러한 支援策의 一環으로, 既存 各種 基金을 統合한 「工業發展基金」도 設置·運用할 計劃이다.

네째 工業政策推進体制의 改善이다. 工業에 對한 專門的인 知識과 識見을 갖는 專門家들(業界·學界·研究所등)모든 情報가 收錄되도록 하며, 最善의 政策이 收錄되도록 한다는 目標 아래 「工業發展審查議會」도 實質的·實用的인 運營을 할 수 있는 方向으로 誘導해나갈 方針이다.

5. 새 法을 통해 期待되는 效果

새로운 法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工業政策 面에서 많은 成果가 나타나는 契機가 될것임을 期待한다.

于先 무엇보다도 製造業에 對한 各種規制의 果敢한 撤廢는 우리의 工業이 새로운 次元의 跳躍을 하게될 轉機를 마련하게 될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事業者에 對한 許可制, 生産施設에 對한 各種規制가 廢止되고 自由로운 生産活動을 展開할 수 있도록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創業이 振作되고 活潑한 工業投資가 일어나게 되도록 霧園氣를 造成하는데 커다란 寄與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民間自律競爭体制의 確立은 企業風土面에서 競爭속의 自己鍛鍊을 生活化하는 産業體質을 이룩할 것이며 競爭力側面에서 이를 補強하거나 整理해 나가는 施策, 그리고 業種別 支援보다는 機能別 支援이라는 시스템을 追求해 나가는 過程 등에서 自然스러운 産業構造改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效率的인 工業發展乃至 國民經濟의 發展도 促進되게 될것으로 期待되는 것이다.

한편, 各界의 컨센서스를 이룩하는 政策体制를 통해서는 政策의 施行錯誤를 最小化하고, 政策自体에 對한 各界의 呼應을 높여 그 效率的인 執行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6. 結 語

現行法이 制定된 以後 지나온 길이 15年이었

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15年後면 다가올 2000年代까지 기어코 先進工業社會를 이룩해 나가려는 時点에서 製造業의 使命은 다시한번 새로운 照明을 받는다.

2000년까지 우리의 GNP規模는 2,520億 달러('84不變價格基準)에 達하게 되어 世界 15位水準의 經濟主要國이 될 것이며, 輸出에 있어서도 2,300億달러('84不變基準 1,235億달러)로 늘어남으로써 貿易規模全體로는 4,550億달러('84不

變基準 2,430億 달러)線이 될 展望이다. 이에 따라 1人當 GNP도 '84年의 2千달러 水準으로서, 91년에는 3千달러, 2000년에는 5千 달러水準이 될 展望이 거니와, 이러한 成長을 해나가는 過程에서 工業部門은 앞으로도 繼續해서 重要한 役割을 다해 나갈것으로 期待되며, 이런점에서 商工部의 새法案의 使命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強調해 두고 싶다.

토막경제

潛在實業

景氣不況

景氣不況下에서 노동자가 갖고 있는 技能 내지 熟練度를 충분히 발휘할 機會가 주어지지 않아 부득이 勞動生産性이 낮은 취업을 강요받는 狀態를 의미한다. 또는 구조적으로 勞動의 限界 生産성이 零이 될만큼 과잉노동자가 존재하는 狀態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부 노동인구를 감소시켜도 總生産量에는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다.

경기후퇴기에 있어 숙련노동자가 半熟練노동자로 또 반숙련 노동자가 미숙련노동자로 格이 떨어지는 것은 被雇傭者가 有效하게 이용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이 비교적 저임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낮은 生産性을 나타내는 서서비스産業에서는 번영기에도 잠재실업의 狀態가 비교적 많다. 고등教育을 받은 者와 숙련자의 취업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잠재실업의 問題는 심각하다.

